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추가〉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3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추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 2 –

현행	개정안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필요’, ‘범죄 수사’, ‘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사유 >

구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
민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료: 현행법 제18조제2항 각 호를 정리

□ 그런데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하 생략)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 범죄 및 재난 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촉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가능 사유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법 제18조제2항 본문) 사유 추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범죄 및 재난 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8조제2항 각 호(제1호, 제3호²⁾,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현재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2)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고, 명백성이나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범죄 및 재난 등의 예방과 대응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법제18조제2항 각 호)>**

- 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3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10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허용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범죄 및 재난 관련 예방 필요성이 일상화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범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23. 3. 14.)되어 범죄 행위나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통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필요시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8
조제2항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